

이소크라테스와 개연성의 수사학*

— 「에우튀누스를 반박함」을 중심으로—

김유석**

목 차

- I. 머리말
- II. 고전 수사학에서 “개연성”(eikos)의 의미
 - 1. 플라톤
 - 2. 아리스토텔레스
 - 3. 위(僞)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드로스에게 바치는 수사학 교본』
- III. 「에우튀누스」 사건의 개요
 - 1. 재판의 맥락
 - 2. 재판의 성격
 - 3. 발언자는 누구인가
 - 4. 「에우튀누스」 연설의 특이성 : “증인 없는(amartyros) 재판”
 - 5. 연설 방향 및 변론 구성
 - 6. 기타 : 연설문의 완결성 문제
- IV. 이소크라테스의 「에우튀누스」 분석
 - 1. 머리말과 진술부
 - 2. 논증부 (1) : 어느 쪽에 범죄의 개연성이 더 높은가?
 - 3. 논증부 (2) : 상황의 개연성은 어느 쪽이 더 높은가?
 - 4. 논박부
- V. 맺음말

* 이 논문은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기초연구지원 인문사회 토대연구(과제번호 : KRF-2009-A00048)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이다. 본 논문이 지금의 모습으로 『법사학연구』에 실릴 수 있게 된 것은 글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일일이 검토하며 유익한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 덕분이다. 특히 이분들은 논자가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탓에 저질렀던 용어상의 오류들과 자칫 간과하고 지나칠 뻔했던 법률 해석상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지적하고 교정해주셨다. 이분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전임연구원(iouskim@hotmail.com).

[국문 요약]

이 논문은 이소크라테스가 남긴 여섯 편의 법정연설문 가운데 흔히 “증인 없는 연설”로 알려진 『에우튀누스를 반박함』의 개연 논증에 관한 연구이다. 아테네 정치사에서 가장 엄혹했던 시기로 평가받고 있는 30인 참주정 체제 하에서 니키아스라는 인물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전 재산을 처분하여 3 탈란타의 금액으로 바꾼 뒤에 사촌인 에우튀누스에게 바꾼 돈 전부를 맡기고는 지방으로 피신한다. 얼마 후 니키아스는 에우튀누스에게 맡긴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나, 에우튀누스는 자신이 받은 돈은 2 탈란타뿐이라고 주장하며 맡긴 금액의 2/3만을 돌려준다. 이에 니키아스는 맡긴 금액 전체를 돌려달라며 에우튀누스를 고소하게 되고, 이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 니키아스를 위해 지지발언을 하고자 하는 친구(公述人)를 위하여 본 연설문을 작성해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소송에서 특기할 점은 돈을 맡기고 돌려주는 일 모두가 어떠한 증거도, 증인도, 목격자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소크라테스는 이 연설문에서 어떠한 증거나 증인, 목격자에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개연성, 인물의 개연성, 행위의 개연성 등, 오직 개연성들에만 의지하여 논증을 만들어 나간다. 본 논문에서는 이 연설문에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논증들을 분석하는 속에서, 개연성이 어떤 특징을 지니며, 일련의 논증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설득력을 생산해내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이소크라테스, 법정연설, 본인소송, 예탁물 반환 소송, 증인, 그릴듯함(蓋然性), 하물며 논증, 수사추론

I. 머리말

어처구니없지만 끔찍한 가정을 하나 해보자. 당신은 사업을 시작할 요량으로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현금으로 바꾼다. 그리고는 그 돈을 동업하려는 친구에게 전부 맡긴다. 그런데 당신은 친구를 너무나 신뢰한 나머지 차용증도,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증인은 물론, “목격자”라고 부를 만한 제삼자도 없이 순진하게 가진 돈을 모두 넘겨준다. 그러자 친구는 받은 현금을 모두 감추고는, 자기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한다. 당신은 뒤늦게 아차 싶어 돈을 돌려받고자 이리저리 알아보지만, 돈을 맡긴 사실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것도 찾을 수 없다.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사기”라고 부른다. 한 마디로 당신은 사기를 당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사기라고 아무리 목청껏 외쳐봐야, 증거도, 증인도, 목격자도 없다면, 과연 누가 당신의 말을 믿어주겠는가? 오히려 당신은 무고나 명예훼손의 혐의로 친구에게 고소를 당할 지도 모른다. 이 사회는 당신의 순수한 믿음이 배신당한 것을 동정하기보다는, 안전장치도 없이 돈을 건넨 당신의 순진함을 조롱하려 들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당신의 선택지는 몇 개 되지 않는다. 혹시 빚이라도 있다면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야반도주라도 해야 할 것이다. 심하게 낙천적인 사람이라면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며, 신실한 사람이라면 신에게서 구원을 찾으려 하겠지만, 이도 저도 아닌 최악의 경우라면, 술에 취해 자동차 뒷좌석에 연탄불을 피우고는 잠을 청할 지도 모른다.

그런데 삶의 남은 부분에 대해 어떤 선택을 했던 간에 평생을 두고 절대 잊지 못할 생각이 적어도 하나는 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더불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이 억울한 상황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나의 어떤 점을 강조해야 사람들은 최소한 내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할까?’ ‘어떤 이유를 제시해야, 사람들은 내가 보증 없이 돈을 맡긴 것이 그럴 만한 행위였다고 납득할까?’ ‘친구의 어떤 점을 부각시킬 때, 사람들은 그가 정말 사기를 쳤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까?’ 요컨대, ‘비록 아무런 증거도, 증인도 없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은 나의 주장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해줄까?’ 당신은 남은 인생 동안 이런 질문을 수천, 수만 번 되뇌며 살아갈 지도 모른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그럴듯함(蓋然性)”의 문제이다.

놀랍게도 우리에게도 방금 제시한 가정과 매우 유사한 상황을 다룬 법정 연설문 한 편이 보존되어 있다. 그것은 고전기 그리스 최고의 수사가 중 한 사람인 이소크라테스(서기전 436~338)가 썼다고 전해지는 『에우튀누스를 반박함(Pros Euthynoun)』이다(이하 『에우튀누스』라 부름). 대략 네 쪽 남짓한 이 짧은 연설문에서 이소크라테스는 증거나 증인, 목격자에 의지하지 않고, 상황의 개연성, 인물의 개연성, 행위의 개연성 등, 오직 개연성들에만 의지하여 논증을 만들어 나간다. 우리는 이 연설문에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논증들을 분석하는

속에서, 개연성이 어떤 특징을 지니며, 일련의 논증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설득력을 생산해내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사실 개연성(eikos)은 이미 고전 철학자들과 수사학자들 사이에서 설득의 핵심 요소로서 간주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먼저 개연성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과 평가를 살펴보고, 이것들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에우튀누스』에 전개된 개연논증들의 구조와 성격을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II. 고전 수사학에서 “개연성”(eikos)의 의미

“개연성”은 원래 “~처럼 보인다,” “~와 같아 보인다,” “~와 닮았다”라는 뜻의 동사 “eikō”에서 왔다. 이미 호메로스에게서 이 동사의 분사형인 “eikōs”와 “eikytia” 등이 나타나며,¹⁾ 중성 분사인 “eikos”가 중성 정관사 “to”와 함께 “그럴 듯함(to eikos)”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시각적인 닮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개연성은 담론 자체의 참, 거짓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기보다는, 해당 주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상태, 그리고 그들의 수에 의해 형성되는 것처럼 보인다. 즉 개연성의 의미는 사안이 지닌 성격 자체로부터 형성되었다기보다는, 사안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조건과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1. 플라톤

개연성이 관찰자의 상태, 무엇보다도 그 수에 의존한다는 생각은 이미 플라

1) 호메로스, 『일리아스』 XVIII. 418; XXI. 254. Cf. P. Chantraine, *Dictionnaire étymologique de la langue grecque* (Paris : Klincksieck, 1977), pp.354~355.

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파이드로스』에서 소크라테스는 초창기 수사가인 티시아스를 인용하면서 “그럴듯함(to eikos)이란 다수의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여겨지는 것(to tōi plēthei dokoun)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한다. 소크라테스가 인용하는 티시아스에 따르면, 힘은 약하나 대범한 자가 힘센 겁쟁이의 물건을 강탈한 뒤에 붙잡혀서 법정에서 세게 될 경우, 두 사람은 참을 말할 수 없으며, 각자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선 힘센 겁쟁이는 자기가 약한 자 한 명에게 강탈당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비굴함 때문이 아니고서는, 강자가 약자에게 물건을 강탈당한다는 것은 다수의 눈에 그럴듯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힘센 겁쟁이가 모두에게 비굴하다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면서 개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여러 명에게 제압당했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용감한 약자는 자신의 범죄를 부정하기 위해, 당시에 오직 둘만 있었다고 주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약자가 강자의 물건을 강탈한다는 것은 전혀 그럴듯하지 않기 때문이다.²⁾ 플라톤이 티시아스를 인용한 데는 사실상 수사학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있다. 왜냐하면 수사학은 진리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으며, 언쟁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사실 관계를 왜곡한다고 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목은 수사학의 핵심이 다수의 설득에 있고, 설득의 관건은 다수가 보기에 그럴듯한 것을 확보하느냐의 여부에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이미 초창기 수사가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2. 아리스토텔레스

그렇다고 해서 개연성이 그저 다수의 눈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아리스

2) 플라톤, 『파이드로스』, 273a-c.

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수사학적 논증을 통해 도출되는 명제들 가운데, 일부는 필연적인 것들에 속하며 필연적인 결론이 도출되는 반면, 다수의 명제들은 대개의 경우(epi to poly) 그렇거나 그럴 수 있는 것들이며, 그에 걸맞는 방식으로 결론이 도출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수사추론을 통해 도출되는 결론들 가운데 일부는 필연적인 반면, 다수의 결론들은 대체로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다. 한편 수사학에서 설득은 그럴듯함(eikora)과 징표들(sēmeia)과 증거들(tekmeria)³⁾로부터 비롯되는 만큼, 이 세 요소들 역시 “필연적으로” 그렇거나, 아니면 “대체로”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⁴⁾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연성이 “반드시 그러함”과 “대체로 그러함” 모두에 걸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플라톤이 그럴듯함에서 필연의 요소를 배제한 것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소수이긴 하지만 필연의 요소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도 개연성을 특징짓는 것은 무엇보다 후자이다.⁵⁾ 한편, 여기서 “대개의 경우(epi to poly)”란 적용되는 사례들의 다양성과 다수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개연성은 특정 주장에 어울리는 사례들이 수적으로 많거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때 성립되는 셈이다.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로마의 수사가 키케로 역시 개연성(verisimile)의 특징을 사례의 빈번한 발생 경향에서 찾는다. 그에 따르면, “이들테면 ‘젊은이들은 정욕에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는 말처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것을 개연적인 것이라고 부른

3) 고전 수사학에서 흔히 “증거”와 “징표”로 옮기는 “테크메리온”과 “세메이온”은 어떤 확실한 질적 차이를 갖는다고보다는 개연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들처럼 보인다. 즉 어떤 사건이나 현상 가운데 추론의 확실성이나 적어도 높은 수준의 개연성을 보장해주는 단서를 증거라고 부르는 반면(예를 들어, 임신은 성관계의 증거가 된다), 증거만큼 확실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추론을 가능하게 해주는 실마리를 징표라고 부른다(예를 들어, 핏자국은 폭행의 징표가 된다). 또한 언설가들은 어떤 확실한 물적 증거가 아니라 정황상의 그럴듯함 역시 “테크메리아”라고 부른다. 이 경우에는 “정황증거” 정도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우리글 IV-1의 인용문(§4)을 보라).

4)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I, 2, 1357a22-b1.

5) 아리스토텔레스, 위의 책, 1357a34-35 : “왜냐하면 개연성이란 대개의 경우(epi to poly) 그런 것이 몇몇 사람들이 규정하는 것처럼 단적으로(haplos)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⁶⁾ 요컨대 플라톤이 바라본 개연성이 관찰자(혹은 청중)의 수에 달린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나 키케로에 이르러 개연성은 주장에 대응되는 사물이나 사태의 측면에서도 확보된다고 하겠다.

3. 위(僞)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드로스에게 바치는 수사학 교본』

이렇듯 개연성이 관찰자(청중)의 측면에서 이야기되기도 하고, 사태의 측면에서 이야기되기도 하는 반면, 오히려 개연성의 근거를 연설을 들은 청중의 마음 상태에서 찾으려는 모습도 눈에 띈다. 중세까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것으로 간주되었던 『알렉산드로스에게 바치는 수사학 교본(Rhētorikē pros Alexandron)』의 저자(이하 『알렉산더 수사학』이라 부름)는 개연성을 일종의 “예화 가능성”에서 찾는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연성이란 누군가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청중들이 마음 속에 그것의 사례들을 떠올리는 데서(hoi akouontes paradigmata en tais dianoiāis echousin) 비롯된다. 무슨 말이나 하면, 예를 들어 누군가가 ‘조국이 위대해지고, 이웃이 행복하며, 적들이 불행하기를 바란다’와 같은 그런 주장들을 할 경우, 그런 주장들은, 한 마디로, 그럴 듯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청중들은 각자가 그것들 및 그와 비슷한 것들에 대하여 동일한 욕구들을 갖는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연설을 수행할 때마다 청중들이 우리의 논의 주제에 공감하고 있는지 여부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⁷⁾ 청중이 연설자의 말을 듣고 그 내용에 해당되는 예를 떠올린다면, 청중은 연설자에게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며, 그만큼 설득이 용이해진다는 말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개연성의 근거를 사태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알렉산더 수사학』의 저자는 청중이 생각 속에 떠올린 사례들로부터 개연성의 근거

6) 키케로, 안재원 옮김, 『수사학(Partitiones Oratoriae)』 34.

7) 위(僞)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 수사학』, 7. 4 (=1428a25-31).

를 찾는다는 점이 차이라 할 수 있다.⁸⁾

이 글에서 개연성에 관한 고전 수사학자들의 생각들을 모두 다룰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검토한 입장들을 놓고 보면, 개연성은 연설을 듣는 청중들과 연설에 대응되는 사태 사이의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그런 점에서 개연성은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을 모두 갖고 있는 셈이다. 청중(의 수나 심리 상태)에 의존한다는 것은 개연성의 주관적 측면을, 주장에 대응되는 사태(의 규모와 빈도)에 의존하는 것은 개연성의 객관적 측면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수사학만의 독특한 점이기도 하다. 철학과 과학의 목적이 진리 추구에 있는 것과 달리, 수사학의 목적은 설득에 있기 때문이다.⁹⁾ 요컨대 설득은 순수하게 필연적인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주관적이거나 자의적인 것도 아니다. 아울러 노련한 연설가는 자신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고, 가능한 많은 대상들을 포괄함을 강조할 것이며, 가능한 한 다수의 청중이 마음 속에 그림직하며 구체적인 사례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III. 「에우튀누스」 사건의 개요

1. 재판의 맥락

「에우튀누스」는 이소크라테스가 쓴 여섯 편의 법정 연설문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재판은 아테네 정치사를 통틀어 가장 암울하고 두려운 시기였던 30인 참주정을 배경으로 한다.¹⁰⁾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8)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는, cf. P. Chiron, *Pseudo-Aristote : Rhétorique à Alexandre* (Paris : Les Belles Lettres, 2002), 139, n.258.

9) Cf. 아리스토텔레스, 앞의 책, 1355b26-27 : “그렇다면 수사학은 <주제들> 각각에 관하여 설득력있는 요소들을 통찰하는 능력이라고 하자.”

처형과 추방, 재산몰수가 횡행했던 30인 체제 하에서, 니키아스라는 사람은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서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돈으로 바꾼다. 그리고는 사촌인 에우튀누스에게 바꾼 금액인 3탈란타¹¹⁾를 맡기고는 시골로 피신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니키아스는 에우튀누스에게 맡긴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에우튀누스는 자신이 맡은 것은 2탈란타 뿐이라며, 2탈란타만을 돌려준다. 공포 정치로 인해 법이 유린당하고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니키아스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30인 참주정이 몰락하고 민주정이 회복되고 나자, 니키아스는 에우튀누스를 상대로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건다. 소송 금액의 규모가 워낙 컸기에, 이 소송은 40인 위원회의 사전 심리를 거친 뒤에, 401명의 판관들(배심원들)로 구성된 재판에 정식으로 회부되었을 것이다.¹²⁾

-
- 10) 지중해 지역의 패권을 놓고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에 27년 동안 진행된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BC 404년에 아테네의 패배로 막을 내린다. 항복의 조건으로 아테네는 자진해서 도시의 성벽을 허물고 스파르타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된다. 이 굴욕적인 종전협상으로부터 아테네인들은 스파르타에 대하여 증오와 동경이라는 이중적인 감정을 갖게 되었다. 특히 크리티아스를 위시한 일군의 젊은 정치인들은 스파르타의 승리가 엘리트주의적 귀족정체 덕분이었다고 생각하고, 스파르타의 체제를 이상적인 정치 모델로 여기게 된다. 결국 이들은 스파르타의 비호 하에 아테네의 권력을 기습적으로 장악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30인 참주정이다. 이들은 먼저 선거권과 자위권 등 기존에 시민들이 누려왔던 권리들을 제한하였고, 이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 민주정의 지도자들을 숙청하였다. 그리하여 403년에 다시 민주파가 정권을 되찾기까지 불과 8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수백여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처형당하고, 수천여 명이 도시에서 추방됨으로써, 30인 참주정은 아테네 정치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 11) 서기전 5세기에 아테네에서 통용되던 화폐 단위에 따르면, 1탈란톤(복수는 탈란타)은 60므나였고, 1므나는 100드라크마(또는 드라크메)였다. 당시의 화폐 가치로 1드라크마는 숙련 노동자 내지는 중무장보병의 평균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이를 감안한다면, 3탈란타(18,000드라크마)는 당시 숙련 노동자가 약 50여 년간(한 평생!)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인 셈이다.
- 12) 아리스토텔레스의 보고(『아테네 정제』 53)에 따르면, 소송금액이 1,000드라크마 이내일 경우 201명의 판관들이, 1,000드라크마 이상일 경우에는 401명의 판관들이 재판을 맡았다고 한다.

2. 재판의 성격

그리스인들은 재판을 “디케(dikē)”라고 부르는데, 디케는 크게 “디케 이디아(dikē idia)”와 “디케 데모시아(dikē dēmosia)”로 구분된다. 오늘날의 재판 분류방식으로는 이 두 가지를 규정하기가 지극히 어려운데, “이디아”가 “개인(idion)”을 의미하고 “데모시아”가 대중을 뜻하는 “데모스(dēmos)”에서 유래한 것임을 감안하면, 디케 이디아는 사적인 성격으로, 디케 데모시아는 공적인 성격을 지닌 소송으로 이해할 수 있다.¹³⁾ 또한 디케 이디아는 사적인 성격과 함께 본인 소송의 성격이 강한 반면, 디케 데모시아는 주로 내란이나 반역 등과 같이 공동체의 안위와 관련된 범죄를 다루며 로마의 국민소송(actio popularis)과 같은 성격이 강했다.¹⁴⁾ 니키아스와 에우튀누스 간의 재판은 금전적인 문제를 놓고 벌이는 디케 이디아에 해당된다.¹⁵⁾

금전적인 문제를 놓고 벌이는 분쟁은 다시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빚상환 소송(dikē chreōs)이고, 다른 하나는 예탁물(預託物) 반환 소송(dikē parakatathēkēs)이다. 전자는 일반적인 채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소송으로 변진 것으로서,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거는 것을 말한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상대에게 돈이나 물건을 맡겼는데 돌려주지 않을 경우, 맡긴 것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이다. 『에우튀누스』 사건은 니키아스라

13) 언뜻 보기에 전자는 민사소송, 후자는 형사소송처럼 보이지만, 아테네에서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물론, 검찰 제도 자체가 없었다. 따라서 디케 이디아에서도 폭행, 살인, 절도, 사기 등, 오늘날로 치면 형사소송에 해당되는 재판이 벌어지곤 하였다.

14) 디케 이디아와 디케 데모시아에 각각 본인소송과 로마의 국민소송(actio popularis)적 성격이 있음을 지적해준 식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15) 이와 달리,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재판의 경우 디케 데모시아에 해당되는데, 그는 1) 도시(국가)가 믿는 신을 믿지 않았고, 2) 새로운 영적인 것을 도입하였으며, 3) 이를 통해 젊은이들을 타락시킴으로써 도시를 위태롭게 했다는 죄목으로 고발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cf. 크세노폰, 『회상』, I, 1, 1 : “나는 소크라테스를 기소한 자들이 도대체 어떤 논변을 사용했기에 그가 도시의 안위를 위해(τῆι πολει) 죽어 마땅하다고 아테네인들을 설득했는지 종종 놀라곤 했다.”(밑줄은 인용자).

는 인물이 자신의 친척인 에우튀누스에게 돈을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예탁물(혹은 任置物) 반환 소송에 해당된다.

3. 발언자는 누구인가?

연설문은 에우튀누스를 비난하고 그의 변명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정작 발언자는 니키아스가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설문은 이소크라테스가 니키아스의 친구를 위해 써준 것으로서 일종의 반박 발언(deuterologia)의 성격을 띠고 있다. 연설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에우튀누스(또는 그의 지지자)는 우선 발언(prōtologia)을 통해서 자신이 니키아스에게 받은 금액은 2탈란타 뿐이며, 자기는 받은 그대로를 돌려주었을 뿐인데, 오히려 니키아스가 자기를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에우튀누스』의 연설가는 자신을 니키아스의 친구이자,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아테네 법정에서는 니키아스의 친구와 같은 사람을 “synēgoros(synēgoros)”라고 부른다. 이 말은 원래 “한 목소리로(함께, syn) 말하는(agoreuein) 사람”이라는 뜻으로, 소송 당사자를 위해 지지 의사를 표명하거나 지지 발언을 해주는 사람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점에서는 오늘날의 “공술인(公述人)”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언뜻 오늘날의 변호사와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고대 아테네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서 발언을 할 뿐, 법률 전문가를 소송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일은 없었다. 다만 드물긴 해도, 이 『에우튀누스』의 경우와 같이, 지지자가 소송 당사자를 대신하거나, 또는 소송 당사자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법정에서 발언을 할 수는 있었다.¹⁶⁾ 우리의 변론문에서 연설자는 친구

16) Cf. Todd, S.C., *The Shape of Athenian Law* (Oxford : Clarendon, 399).

인 니키아스가 부정의를 당해 괴로워하면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을 보고 지지 발언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4. 「에우튀누스」 연설의 특이성 : “증인 없는(amartyros) 재판”

이 연설문에는 “증인 없는(amartyros) 재판”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증인 없는”이라는 부제는 이미 오래 전에 고대의 주석자들에 의해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증인이나 목격자의 증언이 없는 연설은 고대 법정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아테네인들은 은행 거래를 제외하고서는 개인 간에 돈을 맡길 때 거의 예외 없이 증인을 대동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그저 금전 거래 뿐만이 아니라,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만한 모든 일들, 예컨대 결혼이나 매매, 계약, 심지어는 폭력을 수반한 행위(예컨대 사적인 단죄행위로서의 복수)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니키아스의 경우는 매우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하여 급하게 재산을 처분하는 바람에 미처 증인을 마련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고소인은 아무런 증거도, 증인도, 목격자의 진술도 없이 오직 논변의 힘에만 의지하여 주장의 개연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5. 연설의 방향 및 변론 구성

연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는데, 하나는 에우튀누스가 니키아스의 돈을 떼먹었다고 보는 것이 왜 그럴 듯한 지에 대한 논변이며, 다른 하나는 니키아스가 에우튀누스를 상대로 허위 고소를 감행했다는 주장이 왜 그럴 듯한 지 않은지에 대한 논변이다. 변론의 구성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1. 머리말(prooimion) : 지지연설을 하게 된 동기.

§§ 2-3. 진술부(diēgēsis) : 사건의 개요, 쟁점 소개.

§§ 5-10. 논증부(apodeixis 1) : 사기와 허위고소 가운데 어느 쪽의 범죄가 더 그럴듯한가에 대한 논변들.

§§ 11-16. 논증부(apodeixis 2) : 30인 참주정 하에서 어느 쪽의 범죄가 더 그럴듯한가에 대한 논변들.

§§ 17-21. 논박부(elenchos) : 에우튀누스의 변론에 대한 재반박.¹⁷⁾

6. 기타 : 연설문의 완결성 문제

대개의 법정 연설이 주장의 요약과 판관들에 대한 호소를 담고 있는 맺음말을 통해 끝나는 것과 달리, 『에우튀누스』는 논박부에서 갑작스럽게 끝나버린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 II권에서 이소크라테스의 『에우튀누스』를 거론하면서 짤막한 인용을 하는데,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에우튀누스』에는 해당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¹⁸⁾ 이를 근거로 일부 학자들은 이 연설문의 맺음말 부분이 소실되었다고 보기도 한다.¹⁹⁾

하지만 이 연설이 니키아스의 친구들에 의해 이루어진 일련의 지지연설들 가운데 중간의 한 부분이라고 보는 것 또한 가능하다. 여러 지지 연설들 가운데 한 부분이라면 굳이 맺음말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아리스토텔

17) 논거의 배열(dispositio)에 관해서는 학자들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머리말-진술부-입증부(논증과 논박)-맺음말”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Cf. 카시우스 롱기누스, 『단편』 48. 120-169; 무소니우스 루푸스, 『수사학』, § 3; 키케로, 『수사학』 27-60.

18)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II, 19, 1392b10-13 : “더 열등하고 더 약하고 덜 지적인 사람에게 가능한 일은 그와 반대 성질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욱 더 가능하다. 이소크라테스가 ‘만일 에우튀누스가 배우고는(emathen) 정작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다면(mē dynēstai heurein), 이는 매우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라고 말했듯이 말이다.”

19) Cf. G. Mathieu & É. Brémond, “Notice,” in *Isocrate : Discours*, tom. I, Paris, Les Belles Lettres, 1929, 4.

텔레스 역시 이소크라테스의 연설문을 진지하게 인용했다기보다는, “에우튀누스”를 일종의 말장난(euthys + nous = “즉각적인 - 또는 민첩한 - 정신의 소유자”)처럼 사용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사람들이 이미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양 머리말과 진술부가 간략하게 제시되고, 대부분의 내용이 논증과 논박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때, 글의 일부가 소실되었다고 가정하는 것보다는, 일련의 지지연설들 가운데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IV. 이소크라테스의 「에우튀누스」 분석

1. 머리말과 진술부

바로 위에서 소개하였듯이, 이 연설문의 머리말과 진술부는 비교적 간단하다. 머리말에서는 연설자 자신이 법정에서 서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밝히고 있다. 니키아스가 자신의 친구이고, 자신을 필요로 하며, 부정의한 일을 당했으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여, 친구로서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1). 바로 이어서 연설자는 진술부로 넘어가, 30인 참주정하에서 니키아스가 처했던 어려움(§ 2)과 그가 에우튀누스에게 꼼짝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3)을 설명한다. 눈여겨 볼 대목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쟁점에 대한 정리(§ 4)이다.

§ 4. 이상이 사건의 개요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니키아스가 돈을 맡겼을 때와 그가 돈을 돌려받았을 때, 그 자리에 아무도 - 자유인은 물론 노예도 -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노예를 고문해서든, 아니면 자유인의 증언을 청취해서든, 어떠한 것도 알아낼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정황증거들(tekmeria)에 따라 주장해야 하고, 판관 여러분들 또한 정황증거들에 따라 누가 참을 말하는지를 판단하셔야 할 겁니다.

연설자는 이 재판의 어려움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청중들에게 정확하게 고지하고 있다. 그것은 돈의 예탁과 반환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소송 당사자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기에, 증인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 I권에서 증거들(pisteis)을 “기술 외적인 것들(atechnoi)”과 “기술적인 것들(entechnoi)”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기술 외적인 증거들이란 이미 주어진 것들로서 계약서라든가, 증인들, 또는 고문을 통해 얻은 증언 등, “수사학적 기술과 무관한 증거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것들은 적절하게 가져다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설득을 산출할 수 있다. 반면에 기술적인 증거들이란 연설가의 능력과 활동에 의해 갖추어질 수 있는 증거, 즉 “수사학적 기술에 의한 증거들”로서 바로 논변을 통한 설득력의 산출을 의미한다.²⁰⁾

『에우튀누스』의 연설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 사건에서는 기술 외적 증거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설득은 오직 기술적 증거에 의존한다. 이것을 연설가는 정황증거(tekmēria)라고 말한다. “테크메리아”는 일차적으로 “증거”를 의미하며, “징표(sēmeion)”에 비하여 훨씬 더 확실하고 분명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테크메리아는 “움직일 수 없이 확고한 증거”라기보다는 논변을 통해 “정황상 더 그럴 듯한 것(즉 개연적 증거)”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언급을 통하여 연설자는 앞으로의 모든 논변이 니키아스가 피해자라는 주장의 개연성을 높이는 데 집중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 아리스토텔레스, 앞의 책, 1355b35-1356a1.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와 조금 다르긴 하지만, cf. 무소니우스 루푸스 『수사학』, § 27 : “논증이란 문제시되는 것을 확립해내는 일련의 사고를 말한다. 논증에는 네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사람으로부터의 논증(apo prosōpōn)이고, 다른 하나는 사례로부터의 논증(apo pragmatōn)이며, 또 하나는 사례로부터의 논증(apo paradeigmatōn)이고, 마지막 하나는 기술 외적인 요소들(atechnōn)로부터의 논증이다.”

2. 논증부 (1) : 어느 쪽에 범죄의 개연성이 더 높은가?

1) 범죄의 동기, 범죄 이유와 범죄의 능력

먼저 연설자는 범죄가 발생하는 데는 범죄자에게 그럴 만한 이유와 능력이 있어야 함을 지적하고, 니키아스에게는 범죄를 저지를 만한 이유도, 능력도 없음을 강조한다.

§5. 제 생각에는, 대개의 경우, 말에 능하고 가진 것 없는 자들이 말은 못하지만 충분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을 고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니키아스는 에우튀누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말하는 능력은 덜 합니다. 그러니 그가 부당하게 에우튀누스를 상대로 일을 꾸밀 만한 이유는 없는 셈입니다.

이 논증은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이유와 여건이 원인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여기서 그럴 만한 이유로서 제시되는 것은 “대개의 경우(malista)” 가난한 달변가가 자신의 말하는 능력을 활용하여 부자이며 늘변인 사람을 고소하고 이를 통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라기 보다는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일종의 사회적 통념처럼 보인다. 하지만 일단 재판관들이 이러한 사회적 통념을 전제로서 받아들인다면, 니키아스가 더 부자이고 말은 더 못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니키아스에게는 에우튀누스를 공격할 이유가 없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다.

2) 선호되는 범죄의 대상

연설자가 또한 주목하는 것은 범죄의 대상으로 어느 쪽이 선호할만한가 하는 것이다. 범죄자들은 가능한 한 쉽고 안전한 범죄를 선호할 것이다. 만일 니

키아스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에우튀누스를 상대로 범행을 하는 것보다 더 쉽고 선호할만하다면, 에우튀누스가 허위 고소를 당했다고 보기 보다는 니키아스가 돈을 떼어먹었다고 보는 쪽이 더 개연성이 높을 것이다.

§ 8. 또한 설령 니키아스에게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고, 그가 모함하는 것이 가능했을 뿐더러, 또 설령 그러기를 바랐다 하더라도, 그가 에우튀누스를 상대로 일을 진행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친구들을 상대로 시작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들은 친구들과 싸고서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일을 꾸미며, (그런 짓을 저지른다고 해서) 수치심과 두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부유하되 외톨이이고 저항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논변의 핵심은 대개의 경우 범죄를 기도할 때는 잘 아는 사람(친구, 친척)을 상대로 일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는 타인을 상대로 일을 꾸민다는 전제에 기반을 둔다. 이 역시 일정한 사회적 통념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쁜 짓을 저지를 경우, 지인보다는 타인을 상대로 저지를 때 수치심이나 두려움을 덜 느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재판관들이 이 전제를 받아들일 경우, 니키아스가 에우튀누스를 상대로 거짓 고소를 할 이유는 없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사촌지간으로 타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나쁜 일을 획책하는 사람이 선호하는 상대는 돈이 많고 (그래야 더 많은 것을 뺏을 수 있을 테니까!), 외톨이에다가 저항할 능력이 없어야 한다(그래야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없을 테니까!). 이러한 주장은 일종의 유익성 논변 내지는 실용주의 논변처럼 보인다. 즉 같은 값을 치를 경우 가장 많은(또 안전한?)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 선호할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²¹⁾

21) 실용주의 논변에 대해서는 페렐만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Cf. C. Perelman & L. Olbrechts-Tyteca, *Traité de l'argumentation* (Bruxelles, 2008), p.358 : “논변의 평가 기준이 어떤 행위

그런데 위의 논변은 결코 완전하지 않다. 니키아스와 에우튀누스가 사촌관계인 이상, 에우튀누스를 상대로 사용한 것과 똑같은 논변이 부메랑처럼 니키아스에게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니키아스가 에우튀누스의 사촌이고, 그러니 니키아스가 에우튀누스를 거짓으로 고소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반대편도 똑같이 에우튀누스 역시 니키아스의 사촌이고, 그러니 에우튀누스가 니키아스의 돈을 떼먹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주장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니키아스가 아닌 에우튀누스가 사기를 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 9. 하지만 에우튀누스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는 니키아스의 사촌이면서도, 니키아스보다 말과 행동이 더 뛰어나고, 돈은 더 적은 대신 친구들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니키아스야말로 에우튀누스가 범죄를 저지를 마지막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그들이 친척 관계임을 아는 입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① 에우튀누스 역시 만일 그가 그만큼 재산을 지닌 다른 누군가를 상대로 사기를 칠 수만 있었어도, 결코 니키아스에게 나쁜 짓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이 대목에서 논변의 핵심은 밑줄 친 ①이다. 여기서의 논변은 전형적인 수사 추론(entymema), 즉 생략논증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생략된 부분을 복원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증이 형성될 것이다.

(생략된 전제) 같은 규모의 재산을 갖고 있을 경우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 더 낫다

(전제 ①) 에우튀누스가 니키아스 외에 그만큼의 재산을 지닌 사람을 알고 있었다면 니키아스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쳤을 것이다

나 사건에 관하여 그 결과가 호의적인가 호의적이지 않은가에 있는 경우, 이를 실용적 논변이라 한다.”

(생략된 전제) 그러나 에우튀누스는 그런 사람을 알고 있지 못하다.

(생략된 결론) 에우튀누스는 니키아스에게 사기를 칠 수밖에 없었다.

이 논증은 전제들 일부와 결론이 생략된 수사추론(entymema)의 형식을 띠고 있다. 여기서 생략되는 전제나 결론은 모두 청중들이 마음속에(en thymōi)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생략된 전제는 누가 보아도 명백한 것이어서, 그것을 생략해도 주장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다. 여기서 연설자는 금액의 크기(즉 사기를 쳤을 얻게 될 이익)를 (친족이라는) 관계의 중요성에 대립시키고, 전자가 후자를 압도할 경우에는 사촌 관계와 상관없이 사기를 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니키아스가 에우튀누스는 사촌 관계이기에 전자가 후자를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지만, 금액의 크기로 인하여, 사촌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에우튀누스는 니키아스의 돈을 떼어먹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3) 이익의 확실성

다음으로 연설가는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둘 가운데 어느 쪽에 더 확실한지를 제기한다. 범행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게 확실한 쪽이 불확실한 쪽보다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6. 오히려 사람들은 바로 이 사실로부터 에우튀누스가 돈을 받고서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이, 니키아스가 돈을 맡기지 않고서 허위로 고소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개연성 있는 주장이라고 결론지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모든 사람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짓을 저지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사기꾼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통해 얻고자 하는 이익을 이미 얻은 뒤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잡아떼는 것이지요. 반면에 허위로 고소한 사람들은 그 고소를 통해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주장은 ‘이익의 경우 장차 더 확실한 것이 불확실하거나 덜 확실한 것보다 선호할만하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는 논증인 것처럼 보인다. 현재 연설가는 돈을 떼어먹은 것을 사기로 간주하고, 허위 고소는 다른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그 경우 사기는 이미 돈을 받아 떼어먹고(즉, 이익을 얻은 뒤에)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반면, 허위 고소의 경우에는 일단 상대를 허위로 고소하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이익을 거둘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허위 고소는 이익 여부가 확실한 게 아니라 승소나 패소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즉 이익의 확실성 면에서는 허위고소보다 사기가 더 선호할만하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니키아스가 (결과가 불확실한) 허위고소를 감행했다기보다는 에우튀누스가 (이미 확실하게 이익을 거둔 뒤에) 돈을 받지 않았다고 사기를 쳤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연설가의 주장이다.

4) 기회의 회소성

다음으로 연설자는 범죄 기회의 회소성 여부에 주목한다. 누구에 대해서든 쉽게 범행을 할 수 있다면 굳이 사촌을 상대로 범행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반드시 이 경우가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기가 쉽지 않다고 할 때, 그 기회를 놓칠 수는 없을 것이다.

§ 10. 사실 그들의 경우에 사정은 매우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고소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누구든 쉽게 그 대상을 물색할 수 있지요. 하지만 돈을 떼먹을 경우에는 돈을 맡긴 자가 아닌 다른 이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기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니키아스가 악의적으로 고소하기를 원했다면, 그는 굳이 에우튀누스를 상대로 고소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에우튀누스가 돈을 떼먹으려고 마음먹었다면, 그는 니키아스 말고 다른 사람을 상대로 돈을 떼먹을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여기서는 범죄의 기회와 범죄의 대상에서 선호 문제가 논증의 전제로서 작

동하고 있다.²²⁾ 어떤 일(예컨대 범죄)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그 기회와 대상을 물색해야 하는데, 여기서 허위고소의 경우 그 대상이 누구든 비교적 쉽게 재판을 걸 수 있는 반면, 돈을 받고 사기를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에게 돈을 맡길 사람이 있어야 한다. 니키아스가 허위고소를 생각했다면, 그는 에우튀누스든 누구든 아무나 자기 음모의 제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그가 굳이 사촌인 에우튀누스를 허위로 고소할 이유는 없다. 반면에 에우튀누스는 오직 니키아스를 상대로만 돈을 떼어먹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바로 니키아스가 자신에게 돈을 맡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에우튀누스에게 니키아스는 사기를 칠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에우튀누스가 니키아스를 상대로 돈을 떼어먹을 개연성이 니키아스가 에우튀누스를 상대로 허위고소를 감행할 개연성보다 높다는 것이 연설자의 주장이다.

3. 논증부 (2) : 범죄의 조건을 둘러싼 개연성

1) 정치적 상황

범죄의 개연성이 그저 개인의 성격과 처지에만 의존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에 더하여 범죄를 저지를 만한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가 여부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이다.

§ 7.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라가 불안정하고 법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면, 고소를 해봤자 별로 득이 될 것이 없겠지요. 반면에 사기꾼들은 사기를 치는 데 아무런 두려움도 없겠지요. 사정이 이러니, 심지어 증인 앞에서 돈을 빌렸던 자들도 안 빌렸다고

22) 선호(preference)의 토포스에 관해서는, cf. 아리스토텔레스, 『변증론』 III권; C. Perelman & L. Olbrechts-Tyteca, *Traité de l'argumentation* (Bruxelles, 2008), pp.112~128.

잡아떼는 판에, 에우튀누스가 니키아스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돈을 맡아 떼어 먹고는 그런 일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하등의 놀랄 일도 아닙니다. 반대로, 정당하게 돈을 맡긴 사람조차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판국에, 니키아스가 허위고소를 통해 뭉가를 얻어내려 한다고 보는 것은 전혀 그럴듯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이 대목에서 연설자는 일종의 선호 논증 가운데서 질(質)의 토포스를 사용한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질에 해당되는 것은 어느 쪽의 이익이 확실하며 더 거두기 쉬운가하는 문제이다. 즉 이익을 거두기 쉬운 것이 이익을 거두기 어려운 것보다 선호할만하다는 것이다. 연설가는 논증의 방식을 정한 다음에, 이 논증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돈을 떼어먹을 경우에는 증인의 존재 여부에 따라 성공의 용이성 여부가 결정되며, 허위고소의 경우 재판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성공의 용이성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증인 있는 것보다 증인이 없는 경우에 돈을 떼어먹기가 더 쉽고, 법정이 잘 돌아갈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허위 고소를 하기가 더 용이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연설자는 이 조건을 사건이 벌어졌던 상황에 적용시킨다. 즉, 사건이 벌어졌던 때가 30인 참주정으로 인하여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며 법과 제도가 마비되었던 시기였음을 고려한다면, 니키아스가 허위로 에우튀누스를 고소했다는 주장보다는 에우튀누스가 니키아스의 돈을 받고서 받지 않았다고 사기를 쳤을 개연성이 더 높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재판 제도를 이용해 허위고소를 하는 것보다는, 증인이 없는 기회를 이용하여 돈을 떼먹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이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연설자가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하여 일종의 “하물며(a fortiori) 논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증인이 있는 경우에도 돈을 받은 자들이 받지 않았다고 잡아떼는 판에, 하물며 증인이 없으니 에우튀누스로서는 돈을 떼어먹기가 얼마나 쉬겠느냐는 것이다. 거꾸로 나라가 혼란해서 법과 재판이 잘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당하게 돈을 맡긴 사람도 법에 호소하여

자기 것을 되찾기 어려운 판에, 하물며 허위고소를 통해 니키아스가 무엇인가를 얻어낸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라는 지적이다.

2) 고소인이 처한 상황과 피고소인이 처한 상황

정치적 상황에 바탕을 둔 주장을 펼친 뒤에, 연설자는 변론의 후반부에서 니키아스와 에우튀누스가 처한 실존적 상황을 지적하는 속에서 니키아스가 범죄를 행할 개연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연설자는 니키아스가 에우튀누스를 허위로 고소했다는 주장이 전혀 그럴듯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하물며(a fortiori)” 논증을 사용한다.

§ 15. ㉠ 자신의 안위를 지킬 수도 없는 마당에 누군가를 상대로 모함을 감행했을 것이라는 말은 어떤가요? ㉡ 이미 적들이 산적한 마당에 거기에도 새로운 적을 추가할 것이라는 말은요? ㉢ 심지어 그들이 사기를 인정하더라도 그들을 단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상대로 허위고소를 감행했다고 말하는 게 과연 그럴 듯한 주장일까요? ㉣ 자기가 동등한 위치에 있지도 못하면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의도했다는 게 그럴 듯한 생각인가요? ㉤ 취하지도 않은 것을 내놓으라고 강요당했던 상황에서, 빌려준 적도 없는 것을 되찾고자 기도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럴 듯한 주장일까요?

이 대목 역시 전제나 결론의 일부가 생략된 수사추론의 형식을 띠고 있다. 생략된 부분들을 복원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논변이 이루어질 것이다.

검토해 볼 문제 : 니키아스가 에우튀누스를 허위로 고소했다는 주장은 그럴듯한가?

전제 ㉠ : 자신의 것을 지킬 수 없는데 하물며 타인의 것을 상대로 모함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생략된 전제 : 니키아스는 자신의 안위를 지킬 수 없다.)

(생략된 결론 : 니키아스가 에우튀누스를 상대로 모함을 감행하기란 더욱 불가능하다.)

전제 ⑥ : 이미 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좋지 않은 상황인데, 하물며 새로 적을 추가한다는 것은 그럴듯하지 않다.

(생략된 전제 : 니키아스는 이미 많은 적들에 둘러싸여 있다.)

(생략된 결론 : 니키아스가 에우튀누스를 허위고소하여 적으로 만드는 것은 더욱 그럴듯하지 않다.)

전제 ⑦ : 상대방이 사기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상대를 단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하물며 상대방이 사기를 인정하지 않는데 허위고소로 이기기란 더욱 어렵다.

(생략된 전제 : 에우튀누스는 사기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니키아스가 허위고소를 했다고 비난한다.)

(생략된 결론 : 니키아스가 에우튀누스를 상대로 허위고소를 하기란 더욱 어렵다.)

전제 ⑧ :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더 우월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하물며 동등하지도 못한 위치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의도하는 것은 그럴듯하지 않다.

(생략된 전제 : 니키아스는 에우튀누스와 동등한 위치에 있지도 못하다.)

(생략된 결론 : 니키아스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기도했을 리가 만무하다.)

(전제 ㉔) 어떤 사람이 가져본 적도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강제당할 정도로 약한데, 하물며 그런 사람이 준 적도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타인을 강제한다는 것은 그럴듯하지 않다.

(생략된 전제 : 니키아스는 일전에 허위고소로 협박을 당해 돈을 뜯긴 적이 있을 만큼 약한 사람이다.)

(생략된 결론 : 하물며 니키아스가 허위고소를 통해 상대의 돈을 강탈하려 들기란 더욱 쉽지 않다.)

=====
전체 결론 : 니키아스가 에우튀누스를 허위로 고소했다는 주장은 결코 그럴듯하지 않다.

위의 논변에서 연설가는 “하물며(a fortiori)” 논증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일련의 논증들을 수사추론의 형식으로 열거하고 있다. 대개의 연설가들이 수사추론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청중들을 집중시키기 위해서이다. 연설가가 일련의 논변들을 전개하는 속에서 전제와 결론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일부를 비워놓을 경우, 청중들은 지적으로 긴장하게 되고 비어있는 전제나 결론을 스스로 채워나가려 한다. 따라서 청중들은 그저 수동적인 연설의 대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논변의 빈 부분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며, 연설가의 입장에서는 청중들을 자기 연설의 일부로 참여시킴으로써 주장의 호소력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증 방식을 통하여 연설자는 니키아스가 허위고소를 했으리라는 주장의 개연성을 한결 약화시키는 효과를 기도하고 있는 셈이다.

4. 논박부

설득이 나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으로만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 주장의 허점을 공격하여 무력화시킴을 통해서도 나의 주장은 정당화될 수 있다. 특히나 상대의 주장이 강력한 증거들에 기반을 두고 전개될 경우, 청중의 신뢰가 상대방에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장의 근거들을 파괴하거나 최소한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요구될 것이다.

1) 에우튀누스의 변명과 그에 대한 반박

논박을 위하여 연설자는 먼저 에우튀누스의 변명 내용을 소개한다.

§ 16. 하지만 아마도 에우튀누스는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이미 앞서서도 그런 주장을 했지만, 자기가 부정한 것을 하려 마음먹었다면, 1/3만 차지하느니, 맡긴 금액의 2/3도 돌려주지 않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가 부정한 일을 욕구했든 아니면 바른 일을 하고자 원했든 간에, 전체(금액)에 관해 같은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에우튀누스의 변명에서 관건이 되는 전제는 돈과 관련해서 나쁜 일을 꾸미든, 그렇지 않고 바른 일을 하든 간에, 사람들은 금액 전체를 가지고서 일을 벌이지 금액의 일부를 가지고서 일을 벌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부정하게 돈을 가로챘 생각이었다면 전체를 가로채려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 정당하게 돌려주려 할 경우에는 모두 돌려주지 일부만 돌려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배심원들이 이 전제를 받아들일 경우, 에우튀누스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그가 니키아스에게서 맡은 돈의 일부(1/3)를 가로채고 일부(2/3)만을 돌려줄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우튀누스가 니키아스에게 돌려준 2탈란타는 그가 맡은 돈 전체이지 일부가 아니라는 주장이 성립하게 된다. 논증의 측면에서 볼 때, 이 변명은 일종의 소거법과 유

사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처럼 보인다. 에우튀누스는 돈을 맡을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의 수, 즉 ① “전체를 가로채거나,” ② “부분을 돌려주(고 부분을 가로채)거나,” ③ “전체를 돌려주거나” 가운데, 먼저 ②를 제거하고, 다음으로 ①과 ③ 가운데서 2탈란타를 돌려주었다는 사실을 통해 다시 ①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전부 가로채거나 아니면 전부 돌려주었을 것”이라는 식의 이러한 변명은 어떻게 논박할 수 있을까?

§ 17. 하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혹시 부정한 일을 저지르려고 할 때에는, 동시에 변명거리도 고려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설령 에우튀누스가 바로 그 주장들을 염두에 두고서 불의를 저질렀다고 해서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들의 비슷한 경우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은 뒤에 금액의 큰 부분은 돌려주되 적은 부분은 갈취했던 자들이요, 계약의 사소한 부분에서 부정을 행하되, 계약의 큰 부분에서는 정직했던 사람들이지요. 따라서 에우튀누스는 그러한 일을 저지른 유일한 자도 아니요, 최초의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연설자의 논박은 두 가지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행할 때는 변명거리를 준비한다는 통념이다. 이 통념은 에우튀누스가 돈을 갈취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전액을 갈취했을 것이라는 변명을 반박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유관한 사례들을 제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니키아스의 친구가 여기서 실제로 사례를 열거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받은 돈의 큰 부분은 돌려주고 적은 부분은 갈취한 다른 사람들의 경우도 제시할 수 있다”고 단언함으로써, 통념을 뒷받침할 만한 사례들의 존재를 부각시킨다.

이 논증은 에우튀누스가 맡은 돈의 일부를 횡령했으리라는 전제 하에, “왜 전부가 아닌 일부를 횡령했겠는가”라는 변명에 대하여, 그 동기를 설명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위의 주장은 부메랑이 되어 고소자인 니키아스에게 되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다. 즉 허위 고소를 할 경우에도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여러 모로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보충적인 논변이 필요하다.

2) 상대의 주장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기

니키아스에게 동일한 비난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연설자가 택한 방식은 에우튀누스의 변명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19. 또한 여러분은 에우튀누스의 변명과 비슷하게 주장하는 것이 니키아스를 위해서도 얼마나 쉬운 일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니키아스가 2탈란타를 돌려받았을 때 아무도 그의 곁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일 그가 모함하기를 원했고 또 그럴 생각이 있었다면, 분명히 그는 그것들을 돌려받았다는 것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금액 전체에 관해 같은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우튀누스는 더 많은 금액에 관해 위협에 처했을 것이요, 동시에 지금 의지하고 있는 정황증거들(*tekmeriois*)을 사용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논박은 “동일한 원리가 대립적인 입장에 모두 적용된다면 그것은 원리라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으며,²³⁾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재구성될 수 있다.

① 에우튀누스는 자기가 정말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사기), 맡긴 돈의 일부가 아니라 전액을 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을 변호한다.

23) 아리스토텔레스(『변증론』, II, 7, 113a20-32)에 따르면 “대립자 중 하나가 성립하면 다른 하나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대립자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② 이에 대하여 이소크라테스의 변론은 니키아스 역시 자기가 정말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허위고소), 말긴 돈의 일부가 아니라 한 폰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을 것임을 지적한다.

③ 에우튀누스나 니키아스 어느 쪽이든 부분(일부를 돌려줌/일부를 받음)보다 전체(한 폰도 안 돌려줌/한 폰도 못받음)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이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양자 모두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각자 자기들은 이익을 위해 거짓을 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④ 그렇다면 전체와 부분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상반된 입장(고소인과 피고소인) 어느 쪽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⑤ 하지만 같은 원리가 대립되는 입장에 적용된다면, 어느 것이 다른 것보다 더 낫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⑥ 결국 에우튀누스의 주장과 니키아스의 주장 중 어느 한 쪽에 더한 가치를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에우튀누스가 전체와 부분의 논리로 돈을 떼먹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딱 그만큼, 니키아스 역시 전체와 부분의 논리로 자신의 고소가 진짜라고(즉 허위고소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논증의 핵심은 “당신이 x라는 방식을 통해 a라고 주장한다면, 나도 똑같이 x라는 방식을 통해 ~a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x라는 방식은 당신이나 나에게 별다른 설득력이 없다”라는 것이다. 이 논증을 통해 니키아스는 자신의 주장을 하나 버리는 대신, 에우튀누스의 변명 역시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3) 에우튀누스는 왜 맡은 금액의 일부만을 떼어먹었을까?

“돈을 떼어먹는다면 전액을 떼어먹지 구태여 일부를 돌려줘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는 에우튀누스의 변명은 사기꾼들이 흔히 마련하는 변명거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통해 어느 정도 논박되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연설자는 에우튀누스가 돈의 일부만을 떼어먹을 “수밖에 없었던” 좀 더

강력한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에우튀누스의 변명은 그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다.

§§ 20-21. 반면에 에우튀누스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부정을 저질렀는지를 아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키아스가 불행에 직면해 있었을 적에,²⁴⁾ 모든 친지들과 친구들은 그가 지녔던 돈을 에우튀누스에게 맡겼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우튀누스 역시 자신에게 돈이 맡겨진 사실을 많은 이들이 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들은 바 없다는 것 역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일정량을 떼어먹으면 들키지 않을 것인 반면, 전체를 갈취하면 분명히 들킬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서 발뽠조차 못하게 되느니, 차라리 적당한 양을 취하고는 변명의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에우튀누스는 절대로 맡은 금액 전체를 떼어먹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가 돈을 맡았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가 맡은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맡은 금액의 일부를 떼어먹고 일부만을 돌려주는 것이다. 요컨대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맡은 돈 전액을 떼어먹었을 것이라는 변명에 대하여, 연설자는 에우튀누스가 금액의 일부를 떼어먹을 수밖에 없는 강제적인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변명 자체를 논박했다고 볼 수 있다.

V. 맺음말

이 연설이 이소크라테스가 작성한 것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디오게네

24) 아테네가 30인 참주정 하에 놓여 있던 시절.

스 라에르티오스의 보고에 따르면, 소크라테스주의자였던 안티스테네스 역시 이 연설문을 반박하는 연설문을 작성했다고 한다(『이소크라테스의 증인 없는 연설에 관하여(Peri ton Isokratous amartyron)』).²⁵⁾ 또한 이소크라테스와 동시대의 수사가였던 퀴시아스도 이 주제에 관하여, 에우튀누스를 옹호하는 연설문을 썼다고 한다. 아쉽게도 이들의 작품은 모두 소실되어 그 내용을 알 수는 없다. 또한 아쉬운 것은 실제로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승소했는지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증거나 증인이 전혀 없이 오직 개연성만을 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연설은 매우 특이하며, 다소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바로 그 특이함 덕분에, 『에우튀누스』는 설득에서 개연성(eikos)어 어떤 의미를 지니며,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기능을 통해 청중에게 공감과 설득을 전해주는 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처럼 보인다.

■ 참고문헌

1. 이소크라테스 원전, 번역 및 주석

Isocrate : *Discours*, tomes I-IV, textes établis et traduits par G. Mathieu & É. Brémond, Paris : Les Belles Lettres, 1929.

Isocrates : *Discourses* I-II (coll. The Loeb Classical Library), trans. by G. Norlin, Cambridge/Mss. : Harvard Univ. Press, 1928~1929.

Isocrates : *Discourses* III (coll. The Loeb Classical Library), trans. by L. van Hook, Cambridge/Mss. : Harvard Univ. Press, 1945.

Isocrates : *Discourses* I (coll. The Oratory of Classical Greece), trans. & notes by D. Mirhady & Y.L.

25)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저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 VI. 15.

Too, Austin : Univ. of Texas Press, 2000.

Isocrates : Discourses II (coll. The Oratory of Classical Greece), trans. & notes by T.L. Papillon, Austin : Univ. of Texas Press, 2004.

2. 이차문헌

Aristoteles, *Les Topiques*, tom. I-II, texte établi et traduits par J. Brunschwig, Paris : Les Belles Lettres, 1967~2007. (김재홍 옮김, 『변증론』, 도서출판 길, 2008).

_____, *Ars Rhetorica*, ed. by R. Kassel, Berlin : Walter de Gruyter, 1976. (*Rhétorique*, trad. par P. Chiron, Paris : GF-Flammarion, 2007).

_____, 최자영 · 최혜영 옮김, 『고대 그리스 정치사 사료 *Atbenaiōn Politeia*』, 신서원, 2003.

Pseudo-Aristote, texte établi et traduit par P. Chiron, *Rhétorique à Alexandre*, Paris : Les Belles Lettres, 2002.

Brisson, L., 김유석 옮김,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 수사학, 철학적 대화, 변증술』, 『인간 · 환경 · 미래』 7, 2011.

Cicero, 안재원 편역, 『수사학 : 말하기의 규칙과 체계』, 도서출판 길, 2006.

Chantraine, P., *Dictionnaire Étymologique de la langue grecque*, Paris : Klincksieck, 1977.

Grimaldi, W.M.A., “Tekmerion, Eikos in Aristotle’s Rhetoric,”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101-4, 1980.

Hoffman, D.C., “Concerning Eikos : Social Expectation and Verisimilitude in Early Attic Rhetoric,” *Rhetorica*, 26-1, 2008.

Perelman, C. & L. Olbrechts-Tyteca, *Traité de l’argumentation : la nouvelle rhétorique*, Bruxelles : Éditions de l’Université de Bruxelles, 2008.

Longin(Cassius), Fragments & Rufus(Mousonius), textes établis et traduits par M. Patillon & L. Brisson, *Art rhétorique*, Paris : Les Belles Lettres, 2001.

Platon, *Phèdre*(suivi de Pharmacie de Platon par J. Derrida), texte établi et traduit par C. Moreschini et traduit par P. Vicaire, Paris : Les Belles Lettres, 1985(조대호 역해, 『파이드로스』, 문예출판사, 2004; 김주일 옮김, 『파이드로스』, 이제이북스, 2012).

Todd, S.C., *The Shape of Athenian Law* (Oxford : Clarendon Press, 1995).

[Abstract]

Isocrates and the Rhetoric of probability —A study on the “Against Euthynus”

Kim, Iou-Seok*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the use of the probability arguments in *Against Euthynus*, one of the six forensic speeches of Isocrates. This speech is written for a man named Nicias, who attempted to liquidate and hide his assets from the tyranny. He gave three talents to a relative named Euthynus for safe keeping, but Euthynus allegedly failed to return one third of it later. The suit Nicias has brought is thus a *dikē parakatathētikēs*, a suit to recover a deposit. The speech was delivered by a *synēgoros* (a co-pleader) of Nicias. One of the most peculiar thing is the fact that this speech lacks the support of any witness testimony. That is the reason why this speech has a “without witnesses” for a subtitle. Because there is no witness, the arguments must solely depend on every probability : i.d. the probability of the situations, of the persons, and of the acts. This paper will examine what is the nature of the probability arguments and in what manner it produces the persuasive power.

[Key Words] Isocrates, Forensic Speech, *Dikē idia*, *Dikē parakatathētikēs*, Witness, Probabiliy, Argument a fortiori, Enthymema

접수일 : 2012.9.1., 심사일 : 2012.9.19.-9.28., 게재확정일 : 2012.10.7.

* Researcher at Institute of Human, Environment and Future, Inje University